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(약제)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34호(2015.7.27.)
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- 3633호 (2015.7.27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7호, 2015.7.21.)을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- 신설 3개 항목

[395] Agalsidase alfa 3.5mg 주사제(품명: 레프라갈주)

[629] Asunaprevir 경구제(품명: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)

[629] Daclatasvir 경구제(품명: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)

- 변경 9개 항목

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

[일반원칙] 항진균제

[119] Pregabalin 경구제(품명: 리리카캡슐 등)

[142] Ustekinumab 45mg, 90mg(품명: 스텔라라프리필드주)

[392] Kremezin 경구제(품명: 씨제이크레메진세립)

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

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

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

[634] Human anti-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(품명: 정주용 헤파빅주)

※ 시행일 : 2015년 8월 1일

붙임 : 고시개정문, 변경대비표 및 별지1, 2, 3 (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338 (2015.07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7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yh@kha.or.kr